

절대주의 천황제의 공간적 확대

정 창 석*

목 차

- | | |
|--------------------------------------|---|
| 1. 서론 | 8. 만주국의 성립
- ‘오족협화(五族協和)’의 논리 |
| 2. 소위 ‘제국의 남문(南門)’과
‘북문(北門)’의 일본화 | 9. 도덕의 확대
- ‘팔굉일우(八紘一宇)’와 ‘국체(國體)
의 명징(明徵)’ |
| 3. 절대주의 천황제의 성립
- 소위 ‘국체(國體)’의 확립 | 10. 절대주의 천황제와 소위
‘성전(聖戰)’의 논리 |
| 4. 확대의 국시화(國是化)-‘주권선’과
‘이익선’ 선언 | 11. 소위 ‘동아신질서’에서
‘대동아공영권’으로 |
| 5. 청일전쟁-소위 ‘의전(義戰)’의 논리 | 12. 결론 |
| 6. 대만(臺灣)의 ‘황민화(皇民化)’ | |
| 7. 러일전쟁(露日戰爭)
- 한국 지배의 확립 | |
-

1. 서론

근대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을 계기로 전근대성으로서의 왕정복고에 의해 절대주의 천황제를 성립시켰고, 초근대성으로서의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에 의해 자본주의를 구축하여 제국주의적 국제환경 속에서 국권론을 주장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전쟁을 통하여 성장하여 갔다.

그 과정에 있어서 서양으로부터의 억압을 아시아에 돌리는 억압이양(抑壓移讓)으로서의 침략전쟁을 되풀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전쟁의 의미 부여 즉 국가적 혹은 국민적 정당화를 위해 일본제국주의는 소위 문명국임을 자처하며, 아시아에 대한 시혜의식(施惠意識)과 지도자의식을 노골화했다. 그것의

* 동덕여대 부교수, 일본사

결정체가 팔굉일우(八紘一宇)와 황도주의(皇道主義)인 것이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절대주의 천황제를 세계에 확산시킨다는 침략주의와, 소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만이 일본을 통치한다는 국체의식(國體意識)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강요하는 ‘황민화(皇民化)’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침략전쟁으로서의 제국주의전쟁을 거듭함에 따라, 아시아 혹은 세계에 대한 일본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는 전쟁 습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편향은 절대주의 천황제하에서 모든 준거적(準據的) 가치의 원천을 천황에게 귀일(歸一)시켜 일본제국주의가 행하는 모든 전쟁을 황도주의의 실천으로 합리화하기에 이르며, 이윽고는 이 전쟁을 소위 성전(聖戰)으로 정당화시켜 전쟁의 악적(惡的) 판단이 사라져 버리고 걸마음(다테마에, 建前)의 전쟁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 수행자로 하여금 “나는 싸우러 간다기보다 형제를 달래러 간다(中支那方面軍 司令官 松井石根, 중일전쟁 당시)”는 가족주의 도덕관의 왜곡적 확대를 초래하여 전쟁의 체질화 나아가서 전쟁치매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침략주의로서의 소위 팔굉일우와 그 도덕으로서의 황도주의 속에 내재될 수밖에 없는 절대주의 천황제의 숙명이었던 것이다. 팔굉일우란 결국 일본제국주의를 ‘본가(本家)’로 하고, 전 세계를 ‘분가(分家)’로 하는 절대주의 천황제의 가족주의 국가관의 확대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본가’로서의 일본민족의 우월성이 당연시되어 아시아를 ‘지도(指導)’하는 것이 ‘일본의 당연한 의무(Japanese’s Burden)’였고, 이것이 소위 황도주의와 결합되어 한국 지배를 위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고, 타이완의 지배를 위해 ‘내태일체(內台一體)’를, 만주 지배를 위해 ‘오족협화(五族協和)’, 중국 지배를 위해서는 ‘일·지·만일체(日支滿一體)’를 선전하며 아시아에 대한 소위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강요했던 것이다. 또한 침략전쟁을 아시아로 향했을 때 ‘아시아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선전했던 것이다.

명치유신 이후 성립된 절대주의 천황제에는 일본제국주의 헌법에서 규정한 ‘현인신(現人神)’으로서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주의 국가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것의 확대과정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다. 따라서 이 근원적인 천황제(天皇制)의 실상과 그 확대과정의 연구야말로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 필수 불가결의 과제라 할 것이다.

2. 소위 ‘제국의 남문(南門)’과 ‘북문(北門)’의 일본화

1872년 출발한 지 4년 남짓의 명치정부(明治政府)는 류큐왕국(琉球王國)을 병합(併合)했고, 1879년에는 오키나와현(沖繩縣)으로 이름을 바꿔 일본제국주의에 편입해 버렸다. 소위 류큐처분(琉球處分)이라 불리는 이러한 침략행위는 그 이후의 절대주의 천황제 확대 과정의 원형으로서 시발점의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19세기까지 류큐왕국(琉球王國)은 중국에 대하여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1609년 에도막부(江戶幕府)의 사츠마번(薩摩藩)이 침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류큐왕국은 이중의 종속국이 되었다. 사츠마번은 에도막부의 쇄국정책과 맞물리면서 류큐왕국을 중국과의 중계무역의 거점으로 이용하였고, 이러한 무역의 혜택과 사탕을 비롯한 류큐왕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에 의해 부강한 번으로 성장하여 명치유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명치정부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류큐왕국이 영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적 거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1872년 류큐왕국을 폐지하고 류큐번(琉球藩)으로 강등시켜 일본에 병합하는 류큐처분(琉球處分)을 감행한다. 이때의 명분은 ‘중래의 애매하고 고루한 전철을 일소하고’ 국경선을 확정하는 것, 그리고 류큐를 일본 방위의 ‘요충(要衝) 즉 황국(皇國)의 병풍’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¹⁾

그에 앞서 1871년 대만(臺灣)에 표류한 류큐 어민을 원주민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나, 1874년 명치정부가 ‘일본인’ 보호를 위한 보복조치로서 대만출병(臺灣出兵)을 감행한다. 사건의 해결을 위한 중국(淸)과의 협상에서 명치정부는 류큐인을 ‘일본국민’으로 한다는 조항을 중국에 강요함으로써 류큐가 일본의 영토임을 중국이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에도 명치정부의 류큐왕국 침략의 야욕은 집요하게 계속되었고, 이윽고 1879년 류큐번은 오키나와현(沖繩縣)으로 개칭되어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제국주의는 류큐왕국의 일본 영토화와 류큐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위해서 온갖 역사의 날조와 강압적 신민교육(臣民教育)을 실시하게 된다.

즉, 류큐왕국은 ‘지세(地勢)·인종(人種)·풍속(風俗)·언어(言語) 및 고래(古來)의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본의 판도(版圖)’였으며, ‘청국(淸國)과는 단 하나의 연관’도 없는 것은 물론, ‘고대로부터 천황가(天皇家)에 복속(服屬)하고 있었으나, ‘중고(中古) 이후 병마소란(兵馬騷亂)’이 계속되어 천황의 권위가 미치지 못했을 뿐, 류큐는 ‘새롭게 대일본제국에 병합’된 것이 아니라, ‘고대의 상태로 복고한 것’(琉球問題 處分官 內務大丞 松田道之)이라는 주장을 폈다.²⁾

1) 河村富士男 編 ‘外交編 『明治文化資料叢書』 第四卷, 風聞書房, 1972. p.8

한편으로, 소위 ‘제국의 북문’이라 불린 에조땅(蝦夷地)의 아이누민족에 대해서는 에도막부(江戶幕府) 말까지 뚜렷한 정책이 없이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었다가, 1854년 막부와 제정 러시아 간의 화친조약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으로 획정되면서 북방 방어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1869년 명치유신 과정에서 하코다테(箱館)를 거점으로 저항하던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의 막부군이 진압되면서 이곳을 홋카이도(北海道)로 개칭하였고, 1872년에는 개척사(開拓使)를 설치하여 동화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명치정부는 북방 방어선으로서의 홋카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이누민족의 동화에 의한 ‘황민화’보다도, 개척의 수단으로서 아이누민족을 압도하는 일본인을 식민(植民)으로 이주시켜 개척민과 병사를 겸하는 무장식민의 형태로 둔전병(屯田兵)을 육성했다. 초기에는 주로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던 정치범과 가난한 무사계급이 중심이 되었다가, 후에는 일반농민을 대량으로 이주시킴으로써 홋카이도의 완전한 ‘내지화(內地化)’ 즉 영토화를 획책했던 것이다.

1875년의 가라후토(樺太, 사할린)와 치시마열도(千島列島) 교환조약에 의해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진 이후에도 일본제국주의의 이러한 영토화를 위한 ‘황민화’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3. 절대주의 천황제의 성립-소위 ‘국체(國體)’의 확립

일본제국주의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을 제정했다. 입헌제 도입의 핵이 될 헌법 제정 작업의 중심인물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였다. 이토는 1882년과 1883년에 헌법 조사차 유럽으로 유학, 1886년부터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등의 입안자들과 고용 외국인 퇴슬러(H. Rösler, 1834~1904) 등과 함께 기초작업에 들어가 1888년 초안을 완성했다. 이 헌법초안은 추밀원(樞密院)의 심의를 거친 뒤 1889년 2월 11일 흠정헌법(欽定憲法)의 형식으로 공포되었다.

1888년 천황 임석하의 추밀원 개원식에서 헌법을 기초한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체(要諦)는 ‘일본의 기축(機軸)’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토는 기축이 없이 정치를 ‘인민의 망의(妄議)’에 맡겨 국가를 폐망(廢亡)시켜서는 안 된다며, 유럽에 있어서는 입헌정치의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인민들의 마음에 깊이 침투하여 국가의 기축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기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오로지 황실(皇室)뿐이라고 보

았다.³⁾

이렇게 하여 대일본제국헌법에서는 군권(君權)을 중시하여 황실을 기축으로 삼아 제1조에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국체(國體)와 천황주권(天皇主權)이 규정되고, 제3조에 ‘천황은 신성(神聖)하여 범할 수 없다’는 천황의 신격화(神格化)가 법제화된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 의도는 군권(君權)이 강력하고 민권(民權)이 약한 독일식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 의도는 헌법 속에 명료하게 규정되었다. 천황이 주권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과 긴급칙령권 등 강력한 천황대권(天皇大權)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4. 확대의 국시화(國是化)-‘주권선’과 ‘이익선’ 선언

헌법 제정의 이듬해 1890년 당시의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제1회 제국의회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국권론(國權論)을 명확히 내세우는 연설을 행한다.

“국가 독립과 자위(自衛)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주권선(主權線)을 지켜 타국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이익선(利益線)을 방어하여 타국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주권선이라 이르는가? 강토(疆土)가 그것이다. 무엇을 이익선이라 이르는가? 접촉하고 있는 이웃나라의 형세가 자국의 주권선의 안위와 긴밀하게 관계되는 구역을 말한다. 무릇 어느 나라든 주권선을 가지지 않는 나라가 없고, 또한 이익선을 가지지 않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외교와 군비의 요체는 오로지 두 가지 선(線)의 기초 위에서 있어야 한다. 지금의 열국(列國) 속에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홀로 주권선을 수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더 나아가 이익선을 방어하여 항상 요충지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익선을 지키는 길이 무엇일까? 다른 나라가 하는 일이 만일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제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우리의 의지를 달성하는 데에 있다. 무릇 이익선을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가 이익선에서 물러나 주권선을 지키려 할 때, 타국의 원조에 의해 침략은 면한다 해도 완전한 독립국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황은 자신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여 어느 나라도 감히 우리 강토를 엿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나아가서 이익선을 지켜 자위의 계략을 굳게 세우는 점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이익선의 초점은 실로 조선에 있다”⁴⁾

3) 『枢密院會議事録』東京大学出版会, 1984, pp.156~157

4) 大山梓 編 『山縣有朋“一意見書”』原書房, 1966, p.196

당시 일본의 국시(國是)라고 볼 수 있는 이 연설에서 야마가타는 ‘주권선’ 수호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일본의 ‘이익선’으로 한국을 명시하여 이의 침략을 역설하고 있다. 18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해, 이웃 나라 특히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국권론 혹은 ‘정한론’의 차원을 넘어 벌써 군사적 침략의 발판을 굳혔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이 ‘주권선’과 ‘이익선’은 침략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과 대만에서 만주, 중국, 몽고, 시베리아를 거쳐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어 끝없는 무한전쟁(無限戰爭)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5. 청일전쟁-소위 ‘의전(義戰)’의 논리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의 출발은 소위 강화도사건을 도발하여 1876년 한국과 맺은 수호조약(修好條約)이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서양으로부터 강요받았던 불평등조약을 한국에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자신은 하나의 독립국가이기도 전에 한국에 대해서는 그럴 듯한 제국주의국가로 행세했던 것이다.⁵⁾

이후 한국을 둘러싼 극동의 풍운이 급변하는 가운데,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일어난다. 일본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제국주의 전쟁인 청일전쟁의 선전포고문에서 일본제국주의는 ‘동양의 평화’를 내세우며, 한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조선은 제국이 그 처음부터 계유(啓誘)하여 열국의 대열에 나서게 한 독립국의 하나이다. 그러나 청국(淸國)은 매번 스스로 조선이 속국이라 칭하여 음으로 양으로 내정을 간섭, 내란(동학혁명—인용자)이 일어나자 속방(屬邦)이라 칭하며 군대를 조선에 보내기에 이르렀다. 짐(朕)은 메이지15년의 조약(1882년의 제물포조약—인용자)에 의해 군대를 파견, 사변에 대비시키고자 하며 또한 조선으로 하여금 화난(禍亂)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치안을 바로잡고 그러함으로써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먼저 청국에 고했거니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일을 청국은 여러 구실을 붙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⁶⁾

천황의 이름으로 한국을 ‘계유(啓誘)’한다는 일본제국주의의 ‘황민화(皇民化)’의식은 중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태도의 근거에는 근대문명에 일찍 눈떴다는 일본인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절대주의 천황제 하에서 ‘야만(野蠻)’

5) 丸山真男 ‘明治国家の思想’ 『戦中と戦後の間』 みすず書房 1976. p.210

6) ‘宣伝の詔勅’ 『官報』 1894. 8. 2.

이라고 본 동양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문명의식의 합리화가 청일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고 한국을 구하기 위한 ‘의전(義戰)’의 논리로 발전한다. 종교가 우치무라 칸조(內村鑑三)에 의하면, 소위 ‘의전’이란 구약성서에 나오는 기테온이 미데안인을 물리친 것, 혹은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마라톤 사라미스 프라티아 등지에서 격멸한 전쟁,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신성한 인간성을 고양하기 위한 싸움’⁷⁾이라 주장한다.

“오인(吾人)은 믿는다. 일청전쟁은 오인에게는 진정한 의전(義戰)이라고. 그 의로움이란 법률적인 의, 윤리적인 의가 아니다. 의전이란 그러한 의미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쟁은 오인이 모르는 바 아니오, 오인의 교의(敎義)에 의한 것으로 오인이 항상 투쟁하는 것의 하나다. 기독교국이 이미 의전을 망각한 오늘날 비기독교국인 일본이 의전을 실천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⁸⁾

우치무라는 비기독교국인 일본이 기독교국을 대신하여 ‘의전’을 일으킨 정당성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서 찾는다.

“지나(支那)는 조선의 무능을 틈타서 그 의뢰국(依賴國)으로 하려하고 있다. 오인은 외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제까지 이렇게 비열한 정략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잔악한 창가(娼家)의 주인이 그 간계에 빠진 고립무원의 가련한 소녀에게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정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길 잃은 천오백만은 세계 최대의 퇴보국(退步國)의 질투심을 채워 주기 위해서 무지무비(無智無備)의 위치에 있다. 이것은 자유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자 하루라도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오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적악(積惡)에 대하여 비난의 소리를 울리는 것은 일본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국임을 뽐내어 말하는 서양 국가들이 이 세계의 큰 재난을 지구상에서 제거하라고 오인을 앞장세웠다는 것을”⁹⁾

나아가서 우치무라는 중국을 ‘사교율(社交律)의 파괴자’로 보아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단죄한다. 그 근거는 역시 문명의식에 있다.

“일본은 동양에 있어서 진보주의의 전사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더불어 진보의 대적(大敵)인 지나제국을 저거하려는 일본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 자는 우주 만방에 있을 수 없다……오인의 목적은 지나를 경각시켜 그 천직을 깨닫게 하여 오인과 협력하여 동양의 개혁에 종사하게 함에 있다. 오인은 영구의 평화화를 목적으로 싸우는 자이다. 하늘이여, 이 의전에서 쓰러지는 우리 동포의

7) 內村鑑三 ‘日清戦争の義’ 『国民之友』 第234号 1894. 9. p.18

8) 위와 같음.

9) 위와 같음. p.19

전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일본국 생긴 이래 오늘과 같이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투지를 불태운 적이 없나니, 바야흐로 오인은 일치단결하여 오인의 숙적과 싸우려 한다”¹⁰⁾

청일전쟁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및 중국대륙 침략의 제일보를 내디딘 전쟁임을 생각해 보면, 우치무라의 이 ‘의전’논리에 대해서는 ‘그대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요한복음 제8장 7절)’는 성서의 가르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의전’논리에 대한 유혹은 당시 일본인의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1853년 페리(M. C. Perry, 1794~1858)의 내항 이래, 일본제국주의가 문명국으로의 성장을 염원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조약 등 서양 열강으로부터의 수많은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서양에 대한 열등감의 보상작용으로서 동양에 대한 우월감을 형성한 것은 일본인에게도 숙명적이었던 것이다. 이 양면성은 일본제국주의로 하여금 국권론(國權論)의 전통적 국학 사상과 결합하면서 억압이양(抑壓移讓)의 장소를 찾아, 당시 유일하게 가능했던 한국 및 아시아의 침략에 나서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청일전쟁이야말로 잠자고 있는 미개한 중국을 각성시키는 ‘의전(義戰)’이라는 논리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일본제국주의는 ‘의전’의 논리를 스스로 짓밟는 다액의 배상금과 대만 및 요동반도 등의 중국 영토를 손에 넣고 열광했다.

6. 대만(臺灣)의 ‘황민화(皇民化)’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제국주의는 1895년의 시모노세키강화조약(下關講和條約)으로 대만(臺灣)을 식민지로 획득하였으나, 1895년 대만순무(臺灣巡撫) 당경송(唐景崧)이 수립한 대만민주국(臺灣民主國)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 1902년까지 12,000명의 대만인이 희생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대만인의 끈질긴 항일운동이 전개되는 속에서 대만총독부를 중심으로 군사적 지배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대만총독부 초대 학무부장으로 대만 교육정책의 책임자였던 이자와 슈지(伊澤修二)는 1869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영지(領地)의 백성을 우리 황민(皇民)으로 동화시킨다면 실로 우리나라는 남방(南方)에 더 할 수 없는 간성(干城)을 얻는 것이 된다”¹¹⁾

10) 위와 같음. p.23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배의 한계성을 일찍이 경험한 일본제국주의는 대만인의 정신적 개조로서의 ‘황민화(皇民化)’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새로운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군사력으로 그 외형(外形)을 정복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정신을 정복하여 옛 나라에 대한 헛된 꿈을 버리고 새로운 국민적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들을 일본인화(日本人化)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의 사상계를 개조하여 일본인의 사상으로 동화시켜 완전히 같은 국민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¹²⁾

서양인이 기독교를 식민지 통치에 이용한 것처럼, 일본인의 종교적 대상인 ‘성천자(聖天子)의 어능위(御稜威)’를 대만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는 군사적 지배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황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7. 러일전쟁(露日戰爭)-한국 지배의 확립

청일전쟁 이후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러시아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소위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복수심’은 절정에 달해 1904년의 러일전쟁은 필연적이었다.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는 세계 최초라는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이 전쟁에서도 일본인의 ‘의전’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제국이 중점을 한국의 보전에 둔 것은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며 이것은 양국의 오랜 동안의 관계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의 존망은 실로 제국의 안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국(露國)은 청국과의 맹약과 열국에 대한 누차에 걸친 선언을 어기고 여전히 만주를 점거하여 점점 기반을 공고히 하여 드디어는 병탄하려 한다. 만약 만주가 노국이 영유하는 바 되면 한국의 보전은 물론 극동의 평화 또한 기대할 수 없다”¹³⁾

일본제국주의는 러일전쟁에서 한국을 ‘생명선(生命線)’으로, 만주를 ‘이익선(利益線)’으로 설정했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극동의 평화’를 내세웠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를 ‘입헌국과 전제국의 싸움이요, 단일민족 국가와 다민족 국가의 싸움’이며, ‘입헌정치의 사도’를 자칭한 일본의 승리는 ‘입헌정치가 전제주의에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위 ‘민족해방의 전쟁’¹⁴⁾이라고 선전했던

11) 信濃教育会 編『伊沢修二選集』信濃教育会, 1958. pp.587~588

12) 伊沢修二 ‘明治十八年の教育社会’ 『国家教育』 33号. 1895. p.10

13) ‘对露宣戰の詔勅’ 『官報』 1904. 10. 10.

14) 煙山専太郎 ‘日清日露の役’ 『岩波講座・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pp.60~61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의미 설정의 필요성은 외채에 의존하여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일본제국주의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일본제국주의는 기독교국 러시아와 이교도국 일본의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서양 열강의 여론의 불리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양에 사절을 파견하는 한편, 1905년에는 일본의 소위 ‘의전(義戰)’에 임하는 자세를 호소하기 위해 기독교도 혼다 요이치(本多庸一) 등을 유럽에 보냈던 것이다.¹⁵⁾

러일전쟁의 와중에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에 한일의정서(1904. 2. 23)를 강요하였고, 190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었다.

러일전쟁으로 일본제국주의는 남만주철도 경영권을 획득하여 만주(滿洲)를 거점으로 중국에 대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권익과 세력권 확대의 과정은 ‘동양 평화의 확보’를 내세우며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의 과정이었다. 이것을 일본제국주의는 ‘아시아에 대한 양이운동(攘夷運動)’이라고 선전했다.

“일로전쟁의 세계적 의의는 실로 심대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지 러시아의 야망을 타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삼국간섭 이후의 눈사태처럼 밀려 온 서양의 지나 침략을 최종적으로 격파한 것이었으며 명치유신과 일청전쟁에 이은 제삼의 아시아 양이운동(攘夷運動)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청전쟁, 북청사변(北清事變, 1900년의 의화단의 난—인용자), 일로전쟁에 있어서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방벽으로서 항상 지나를 서양 침략의 위기로부터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를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서양의 교활한 사주에 편승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과 지나의 숙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크나큰 비극이었던 것이다”¹⁶⁾

러일전쟁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아시아의 헌병’ 나아가서 ‘일등국가’로의 성장을 과시하며, 1910년 한일병합을 강행하여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된다.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의 구축을 원하며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여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를 바라나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다.”¹⁷⁾

15) 大浜徹也 ‘戰時外交とポーツマス條約’ 『近代日本史の基礎知識』 有斐閣 1982. p.193

16) 日本世紀社同人 ‘聖戰の本義’ 『文芸春秋』 1942. 1月号. p.93

17) 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 岩波文庫 1984. p.237

한국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영토화와 내지연장주의는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민화(皇民化)’로 구체화되어, 한국 민족의 말살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8. 만주국의 성립-‘오족협화’의 논리

일본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켜 만주를 식권한 다음, 1932년 만주국을 건국시킨다. 괴뢰국가 만주국의 성립에 있어 일본제국주의가 내세운 것은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도낙토(王道樂土)’의 건설이었다.

“이렇게 내외로부터 영미(英米)의 압박이 실로 그 극에 달했던 소화6년(昭和六年, 1931년-인용자) 만주사변이 발발했던 것이다. 그것은 일로전쟁 후 30년 만에 일어난 아시아 해방의 성화(聖火)이며 또한 대전(제1차 세계대전-인용자) 후의 영미적 국제연맹체제에 대한 최초의 반격으로써……소화7년(1932년-인용자) 3월 만주국 건국, 일만의정서(日滿議定書) 조인—여기에 일로전쟁(日露戰爭) 이래 십만의 선인이 벽혈(碧血)을 뿌린 만주의 천지는 처음으로 서양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의 날을 맞이한 것이다”¹⁸⁾

만주국의 탄생은 관동군의 주도에 의한 일본제국주의의 전면적 침략의 결과이며, 1929년의 세계 경제공황의 일본적 타개를 노린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정책의 일환이었다. 이것이 ‘아시아 해방의 성화’이며 ‘해방의 햇살’로 선전되었던 것이다.

1936년 만주사변 5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관동군(關東軍) 사령관(植田兼吉 대장, 참모장 板桓征四郎 중장)이 기초한 극비문서 ‘만주국의 근본이념과 협화회(協和會)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

이 문서는 우선 계급투쟁을 수단으로 하는 소련의 세계정책과 자본주의를 기조로 한 영·미의 세계정책이 내재적 모순에 의하여 환멸의 길을 걸어온 것에 비하여, ‘황도(皇道)’에 입각한 일본제국주의의 세계정책은 홀로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일본민족의 선민성(選民性)의 유래를 ‘실로 야마토 민족(大和民族)은 안으로 우수한 자질과 탁월한 실력을 내장하고 있으며, 밖으로 너그럽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타민족을 지도유액(指導誘掖)하여,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게으른 자를 채찍질하며 받들지 않는 자를 받들게 하여 더욱 더 도의세계에 같이 나서게 해야 하는 하늘이 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만주 건국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상을 드러낼 사명을 지닌 야마토민족의 세계사적 발전과정의 제1단계이며, 점차 중국, 인도, 호주, 시베리아에 제2, 제3의 만주국을 건설하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⁹⁾

18) 日本世紀社同人 ‘聖戰の本義’ 『文芸春秋』 1942. 1. p.94

만주사변을 계기로 절대주의 천황제의 황도주의(皇道主義)는 ‘야마토민족의 우월성’으로, ‘동양의 평화’는 ‘아시아의 해방’으로 합리화되고, 소위 ‘조국정신(肇國精神)’이라는 ‘팔굉일우(八紘一宇)’와 결합되어, 침략전쟁을 ‘성전’이라 선전하며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과 ‘세계최종전(世界最終戰)’ 구상으로 전개된다.

9. 도덕의 확대-‘팔굉일우’와 ‘국체(國體)의 명징(明徵)’

일본에서는 1935년 미노베 다츠키치(美農部達吉)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을 배경하는 과정에서 ‘국체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이 성행하여, 이후 ‘국체의 명징’은 국민 도덕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문부성(文部省) 발행의 『국체(國體)의 본의(本義)』이다. 거기에는 국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이 황조(皇祖)의 신칙(神勅)을 받들어 영원히 이를 통치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만고불역(萬古不易)의 국체(國體)이다. 그리하여 이 대의에 기반을 두고 일대가족국가(一大家族國家)로서 억조일심(億兆一心) 성지(聖旨)를 받들어 능히 충효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체는 우리나라 영원불변의大本(大本)이며, 우리나라의 역사(國史)를 관통하여 광채를 발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여기에는 천황주권과 국체의 신수설(神授說), 그리고 천황제의 가족국가관이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천황제의 절대성과 역사성이 표명되어 있다. 이것은 학사원(學士院) 편찬의 『제실제도사(帝室制度史)』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우리 나라 개벽 이래 군신(君臣)의 도리가 엄격하게 정해져 황위(皇位) 계승은 황통(皇統)을 통해 이어지며 신하된 몸으로 군(君)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군(君)은 민(民)을 공민(公民)으로서 자비로 대하고 민은 군을 살아 있는 신(現人神)으로 받드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황실과 신민과는 근원을 같이 하는 분파(分派)이며, 신민은 황실을 국가의 종가(宗家)로 우러러 보고 군민(君民)으로 하여금 부자(父子)의 친목을 겸해 충효일여(忠孝一如), 상하상친(上下相親), 군은 민을 자애함을 덕으로 하고 민은 일심으로 군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신념과 국민적 정조(情操)는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

19) 臼井勝美 『日中戦争』 中公文庫 1981. pp.8~9

20) 『国體の本義』 文部省 1937. p.9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체가 만방무비(萬邦無比)한 원인이며 국체의 본의(本義)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²¹⁾

이러한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대는 식민지 한국에도 그대로 유입되어 한국인의 도덕률로 강요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정보과 조사관 이시모또 세시로(石本清四郎)는 ‘도의조선(道義朝鮮)’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팔굉이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우란 일가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대동아 내지는 전 세계를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가족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건설하고 있는 신질서는 세계 전 인류를 우리의 가족으로 포용하여 우리의 자식과 형제로 삼아 각각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것이다. 팔굉일우의 황도정신(皇道精神)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의 국체정신이며 말할 것도 없이 직접적으로는 신무천황(神武天皇)의 조칙(詔勅)에 그 근거를 둔 이 정신은……즉 황실과 국민, 황실과 국토, 국민과 국토의 관계는 부자 형제의 가족관계이며, 원래부터 일체였다고 보여 단지 인간관계에서만 아니라 인간과 산천초목까지도 우리의 가족이고 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황도문화권(皇道文化圈)의 일환(一環)인 우리 조선은 이러한 도의적 수련을 통하여 정화하고 반도의 천지에 순연한 도의를 확립하여 대동아공영권내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성장하는 것이 도의 조선 확립의 근본이념인 것이다”²²⁾

‘황민화’와 ‘내선일체’는 그 기본을 소위 ‘국체의 명징’에 두고, 절대주의 천황제의 도덕을 한국에까지 확대시킨 지배정책이었던 것이다.

10. 절대주의 천황제와 소위 ‘성전(聖戰)’ 논리

일반적으로 소위 ‘성전(聖戰)’이라는 용어는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中日戰爭)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1937년 11월 18일 육군성(陸軍省) 신문반 발행의 ‘시국(時局)의 중대성’이라는 팜프렛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원래 이번 사변은 일면적으로 관찰하면 일본과 지나의 분쟁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은 각도에서 관찰하면 무모한 배외사상, 위험한 공산주의, 패도적 제국주의를 옹정하여 세계에 국제정의를 확립하려는 신국(神國) 일본의 성전(聖戰)인 것이다”²³⁾

21) 大日本帝国学士院編纂 『帝室制度史』 第一卷 大日本帝国学士院 1937. p.126

22) 『朝光』 1942. 9月号. pp.27~29

23) 陸軍省 新聞班 『時局の重大性』 1937. 11. 18. p.66

소위 ‘성전’이란 ‘신국(神國) 일본이 행하는 전쟁’으로, 중일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일본이 행하는 모든 전쟁으로 확대된다.

“지나사변만이 성전이라 한다면 일청(日淸), 일로(日露), 만주사변 등은 전부 성전이 아니요 제국주의 전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영토를 손에 넣고 배상금을 요구한 일청, 일로의 전쟁은 과연 제국주의 전쟁이었던가. 한결같이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싸우는 황군(皇軍)의 전쟁에 이러한 구별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선각들은 이러한 비성전(非聖戰)의 전쟁을 위해 수십만의 피를 흘렸던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일찍이 황군이 싸운 전쟁 중 성전 아닌 제국주의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영토의 할양, 배상금의 유무 같은 것은 단지 형식상의 지엽적인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대의(大義)를 가지고 싸웠는가에 있다. 한조각의 영토, 배상금 등에 구애되어 그것의 유무만을 가지고 성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근세적 유물론의 편견을 폭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사 이래의 일본의 전쟁은 전부가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유물론을 까마득히 넘어서는 천업익찬(天業翼贊)을 위한 일관된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서양 제국주의와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배제하려는 대의에 기반을 둔 성전인 것이다”²⁴⁾

더불어 소위 ‘성전’ 개념은 그 근원을 ‘팔굉일우(八紘一宇)’에 두고 역사성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은 단지 명치유신(明治維新) 이래의 것이 아니라 멀리 건국 이래의 전통에 입각한 것이다. 제1대의 천황을 신무(神武)로 하여 열성의 덕을 ‘성문신무(聖文神武)의 덕(德)’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결코 이유없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황은 ‘육합(六合)을 합쳐서 도읍을 열고 팔굉(八紘)을 덮어 우(宇)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칙서를 내려 천업회홍(天業恢弘)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떠도는 나라들을 수리고성(修理固城)하여 팔굉을 우로 한다는 것은 결코 단지 제국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세계 국가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며 건국 이래 현재에 이르는 절실한 비원을 아는 것이다……진실로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나니, 우주만물이 유일절대의 태양을 중심으로 질서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세계 인류는 태양의 아들인 천황에 귀일순종(歸一順從)함으로써 처음으로 질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우주의 절대권위에 바탕을 둔 세계질서야말로 천업회홍(天業恢弘)이며 세계평화 역시 거기에서 약속되는 것이다”²⁵⁾

이렇게 하여 세로축으로서의 시간성이 고대로부터 근대까지를 꿰뚫고, 가로축

24) 日本世紀社同人 ‘聖戰の本義’ 『文芸春秋』 1942. 1月号. p.89

25) 위와 같음. pp.96~97

으로서의 공간성이 ‘천양무궁의 황운’을 등에 업고 ‘팔굉위우(八紘爲宇)’의 실천적 구체화인 ‘팔굉일우(八紘一宇)’를 이루기 위해,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왕이 없다’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대는 침략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전쟁이란 한편으로 평화의 파괴이며 다른 한편으로 평화의 수복이다. 어느 전쟁에서나 주관적 정당성에 의한 평화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유사 이래의 건국정신’이라는 ‘팔굉일우’를 실천하는 것이 ‘천업회홍’이라고 선전하는 일본제국주의 전쟁에서는 이 평화감각도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대에서 나온다.

“평화란 어디까지나 ‘대화(大和, 야마토로 발음하여 일본이라는 의미도 있음-인용자)’를 의미하여 소위 근대국가의 정치적 통용어인 ‘평화’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근대정치가 말하는 ‘평화’가 영미적 구질서의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것에 비해 우리의 대화(大和)로서의 평화는, 천의(天意)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신무불살(神武不殺)의 검(劍)을 휘둘러 평정하고 성전의 완수를 일관했을 때 처음으로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건국의 국시로서의 평화는 함부로 한조각 국제 관용어로서 가볍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참을 수 없는 굴욕마저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대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쳐부순다—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무성검(神武聖劍)의 참뜻인 것이다”²⁶⁾

평화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것이며 인류 공통의 합목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유출되는 평온한 상태 즉 전쟁의 영원한 종식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아들인 천황’의 의지 즉 ‘천의(天意)’로부터 유출되는 ‘대의(大義)’에 기반을 두고 ‘팔굉을 평정하여 대화(大和)를 펼쳐서 일우(一宇)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절대주의 천황제의 ‘성전’ 개념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확대되어 갔다. 소위 ‘성전’의 완수가 ‘팔굉일우’에 있는 이상 ‘세계최종전’의 도래는 필연적이다. 만주국 건설자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는 1927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전쟁은 드디어 국민의 분기(奮起)를 촉진하고 전국민의 자각과 사상의 통일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다가올 소모전쟁에 의해 일본은 우선 국민적으로 일본 국체(國體)의 대정신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또한 전쟁에 의하여 우리 상공업의 근저를 길러 전쟁에 의해 오히려 국가경제의 급격한 진보를 이룩하여 다가올 섬멸전쟁인 세계대전 소위 “전대미문의 대투쟁”을 준비해야 하며, 이 최종적 대결전적 전쟁에 의해 드디어 세계의 강적을 굴복시키고 일본 국체의 대정신을 세계 인류에 철저히 시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의 시대

26) 위와 같음. p.97

에 돌입하리라고 확신하여 의심치 않는다“²⁷⁾

이 ‘세계최종전쟁’은 동양의 패자를 자부하는 일본제국주의와 서양을 대표하는 미국을 상징하고 있다. 이시하라가 말하는 ‘세계최종전쟁’은 인류의 ‘섬멸전쟁’이며 ‘일본 국체의 대정신을 세계 인류에 철저히화시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가 다가오는 극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그는 ‘전쟁에 의해 전쟁을 양성’하는 나폴레옹의 전쟁방식을 채택, ‘전쟁에 의하여 오히려 국가경제의 급격한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점령지에서의 징세 및 물자와 병기를 징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대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1. 소위 ‘동아신질서’에서 ‘대동아공영권’으로

중일전쟁 이후 소위 ‘성전’은 확대일로를 걷게 되고 그것에 대한 ‘성전’ 논리의 적용 범위도 커져만 간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쟁 불확대를 내세워 그 해결에 고심하고 있던 제1차 고노에내각(近衛內閣)은 1938년 11월 3일 소위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 성명을 낸다.

“제국이 바라는 것은 동야 영원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신질서의 건설에 있다. 이번 정전(征戰)의 궁극적 목적도 또한 여기에 있다. 이 신질서의 건설은 일본 만주 지나의 삼국이 서로 손을 잡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상호(相助) 연관(聯關)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²⁸⁾

이어서 1940년 6월 29일 요나이내각(米內內閣)의 외무대신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는 라디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의 이상은 만방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자리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방침도 또한 이 이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국운을 걸고 싸우는 것도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동야의 여러 나라와 남양의 여러 지방과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서로 융통하여 공존공영의 결실을 거두어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자연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일괄하여 공존의 관계에 입각한 지역권을 수립, 그 안정을 꾀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

27) 『石原莞爾資料 — 戦争史論』原書房 1968. p.431

28) ‘国民政府と雖ども拒否せざる旨の政府声明’日本外務省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巻, 原書房1973. p.401

합니다”²⁹⁾

‘동아신질서’의 범위를 동남아시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1940년 7월 26일 제2차 고노에내각(近衛內閣)에서 ‘기본국책요강’으로서의 ‘대동아신질서’ 논리가 된다. 소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구상의 탄생이다.

“황국(皇國)의 국시는 팔굉(八紘)을 일우(一字)로 하는 건국의 대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 근본이념이다. 우선은 황국을 핵심으로 일본 만주 지나의 강고한 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동아신질서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황국은 스스로 하루 빨리 신사태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불발(不拔)의 국가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국시의 구현에 매진해야 한다”³⁰⁾

또한 같은 해 8월 1일 외무대신 마츠오카 요스케(松岡洋助)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제관계에 비추어 황도(皇道)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각 국민 각 민족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얻게 하는 것에 귀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외교방침으로서 이 황도의 대정신에 의거하여 우선 일본 만주 지나를 일환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나아가서 우리와 동조하는 우방과 제휴,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하늘로부터 부과된 우리 민족의 이상과 사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³¹⁾

이어서 9월 6일 4대신(수상, 외무, 육군, 해군)회의에서는 ‘일·독·이(日, 獨, 伊) 추축(樞軸) 강화에 관한 건’을 결정, ‘대동아공영권’의 범위를 명시했다.

“천황의 대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한 생존권에 관하여, 독일 이탈리아와의 교섭에서 황국의 대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한 생존권으로서 고려해야 할 범위는 일본 만주 지나를 근간으로 하고 구독일령 위임통치 제도(諸島), 프랑스령 인도 및 태평양 도서(島嶼), 태국, 영국령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네델란드령 동인도, 버마, 호주, 뉴질란드(新西蘭) 및 인도 등으로 한다. 단 교섭상 우리가 제시하는 남양지역(南洋地域) 버마 동쪽으로부터 네델란드령 인도뉴카레도니아 이북으로 한다. 또한 인도는 어느 정도 소련의 생존권 내에 넣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³²⁾

29) ‘國際政勢と帝國の立場’ 위와 같음. p.436

30) ‘基本国策要綱’ 위와 같음. p.436

31) ‘松岡外相外交方針闡明’ 『朝日新聞』 1940. 8. 2.

32)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p.450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이익선’에서 ‘생존권’으로 규정,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대를 위해 일본제국주의는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에 돌입한다.

이때가 바로 소위 ‘기원 2600년’을 선전한 시절이어서, ‘봉축(奉祝)’, ‘천양무궁(天壤無窮)’, ‘만세(萬歲)’, ‘기미가요(君が代)’, ‘수사(壽詞)’, ‘팔굉일우(八紘一字)’, ‘성은(聖恩)’, ‘황모(皇謨)의 익찬(翼贊)’, ‘국체(國體)’, ‘동아의 안정과 해방’, ‘세계의 평화’, ‘천인침(千人針)’, ‘성전(聖戰)’, ‘황군(皇軍)’, ‘조국정신(肇國精神)’ 등 각양각색의 소위 ‘언령(言靈)’들이 난무하여, 일본인은 그야말로 열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전쟁 열기로 이어져 독일은 대게르만제국을,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의 부활을, 일본은 ‘팔굉일우’의 실현을 꿈꾸며 끝없는 전쟁의 도정에 오르는 것이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의 선전포고문은 다음과 같다.

“천우(天祐)를 보유하고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조(皇祚)를 실천하는 대일본제국 천황은 충성심과 용맹에 빛나는 너희 민중에게 알린다. 짐(朕) 여기에 미국 및 영국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한다. 짐의 육해군 장병은 전력을 기울여 교전에 임할 것이며, 짐의 백료유사(百僚有司)는 열성을 다하여 직무를 봉행할 것이며, 짐의 못 백성은 각각 그 본분을 다하여 억조일심(億兆一心) 국가에 충력을 기울여 정전(征戰)의 목적 달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원래 동양의 안정을 확보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멀리 황조고(皇祖考) 황고(皇考)로부터 이어 받은 원려(遠慮)로서 짐이 항상 잊은 적이 없는 바이며 ……
……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을 믿는 짐은 너희 민중의 충성심과 용맹을 믿고 의지하여 조종(祖宗)의 유업을 회홍(恢弘)하고 하루 빨리 화근을 무찔러 없애 동아 영원의 평화를 확립하여 제국의 영광을 확보하려 하노라”³³⁾

여기에는 ‘조종(祖宗)의 유업을 회홍(恢弘)’한다는 ‘팔굉일우’의 침략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종래에는 없던 ‘자존자위’를 강조하여 ‘ABCD포위망’에 쫓기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국제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선전포고문이 갖는 ‘영구전쟁’의 성격을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일청전쟁과 일로전쟁 사이에도 얼마간의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이었다. 원수의 의사표명이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다는 점, 군과 ‘백료유사(百僚有司)’ 뿐만이 아니라 ‘못백성’까지가 ‘짐’에 편입되어 있는 점, ‘억조일심’이 기대되어 ‘국가의 충력’을 기울이는 총력전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두 번째로 개전의 의사주체가 원수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며 실로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이고 ‘황조황종의 유업을 회홍’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세 번째로 국제법규의 준수가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

33) 위와 같음. pp.573~574

다. 이것은 열국의 감시의 눈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자존자위’라는 불필요한(모든 전쟁은 주관적으로는 자위행위인 것이다) 강조가 있는 것과 합쳐 보면 ‘일체의 장애를 깨뜨려 부순다’는 그 ‘장애’ 속에는 기존의 법질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행위가 법을 만든다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즉 전쟁 그 자체가 목적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네 번째로 전체의 문맥을 통하여 영구전쟁의 이념을 느낄 수 있다.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동아 영원의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고 평화 일반이 아니다. 이 부분의 문맥은 세계 제패의 예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읽어 낼 수 있다”³⁴⁾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소위 ‘성전’으로 포장하며, 그 가치를 ‘조국정신’이라는 ‘팔굉일우’에서 추구하여 근대 전쟁을 까마득한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시간적 역합리화(逆合理化)하는 복고주의 및 순환논리를 반복하는 이상, 그 전쟁이 필연적으로 전쟁이 전쟁을 부르는 영구전쟁 혹은 무한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은 필연이다. 소위 ‘팔굉일우’가 무한이라면 ‘만방(萬邦)이 그 자리를 잡게 하는’ 황도주의의 실현도 무한이기 때문이다.

1943년 11월 5일과 6일의 ‘대동아회의(大東亞會議)’를 끝낸 도조내각(東條內閣)은 ‘대동아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본래 세계 각국이 서로 의지하고 상부하하여 만방공영의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은 세계 평화 확립의 근본 도의인 것이다. 그러나 영미는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타국이 타민족을 억압하여 특히 대동아에 대해서는 지칠 줄 모르는 침략과 착취를 자행하여 대동아 노예화의 야망을 노골화하였고, 드디어는 대동아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했던 것이다. 대동아전쟁의 원인은 진실로 여기에 있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제휴하여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영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자존자위를 이룩하기 위해 다음의 요령에 의해 대동아를 건설, 세계 평화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³⁵⁾

이 선언의 바로 뒤를 이어 미국·영국·중국의 삼국에 의한 ‘카이로선언(1943. 12. 1)’이 채택되어 일본제국주의 항복 후의 일본 영토를 규정하고, 일본제국주의 지배하의 식민지 해방을 외친 것은 세계사의 표면에 등장하는 열강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낙일(落日)의 사투를 계속하던 일본제국주의는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다. 그때의 소위 ‘종전(終戰)의 칙서’는 다음과 같다.

34) 竹内好 ‘近代の超克’ 『近代の超克』 富山房百科文庫 1983. p.313

35) ‘大東亞共同声明’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p.450

“짐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을 비추어 볼 때 비상한 조치로써 수습하기 위해 짐 여기에 총량한 너희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영국 미국 지나 소련 4개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함을 통고하도록 하였다. 원래부터 제국 신민의 강령(康寧)을 꾀하고 만방공영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은 황조황종(皇祖皇宗)이 남긴 규범으로 짐이 항상 잊지 않고 있던 바, 영미 2개국에 선전포고한 이유도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바랐던 것에 있었으며 타국의 주권을 배제하고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원래 짐의 뜻이 아니다……짐은 제국과 더불어 시종 동아의 해방에 협력한 맹방들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짐은 시운이 흐르는 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서 만세를 위한 태평을 열기를 바란다. 짐은 여기 국체를 호지(護持)하여 총량한 너희 신민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너희 신민과 같이 있다……아무쪼록 거국일가(舉國一家)로 자손에 전하여 능히 신주(神州)의 불멸을 믿는다……서로 맹서하여 국체의 정화를 발양, 진운(進運)에 낙오함이 없도록 하라”³⁶⁾

이 ‘중전의 칙서’를 한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국민에게 또한 동아의 제민족에게 미증유의 대손실을 가져다 준 불의의 침략 전쟁을 끝냄에 있어 천황이 국민에게 호소한 말은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항복하여 ‘국체를 호지’할 수 있었음을 즐거워하고 앞으로 더욱 더 ‘맹서하여 국체의 정화를 발양’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희생도 고통도 이웃국가들에게 끼친 고난도 돌아봄이 없이 천황제 유지 단 한 가지 이외에는 문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전쟁의 본질도 내용도 이 칙서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³⁷⁾

절대주의 천황제, 그것은 아직도 일본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미제(未濟)의 과제인 것이고, 아시아 제민족에게는 여전히 침략주의의 화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감시의 대상인 것이다.

12. 결론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은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대 과정이었다. 절대주의 천황제는 그 침략의 야망을 서양제국주의와의 대결의식으로 합리화하였으나, 그 근처에는 서양에 대한 열등감을 아시아에 돌리는 억압이양(抑壓移讓)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의 보상작용으로서 일본제국주의는 소위 문명국임을 자처하며, 아시아에 대한 시혜의식(施惠意識)과 지도자의식을 노골화했다. 그것의 결정체가 ‘팔굉일

36) ‘終戰の詔勅’ 위와 같음. pp.636~637

37) 家永三郎 『日本史資料』 下卷 東京法令出版 1974. p.892

우(八紘一字)’와 ‘황도주의(皇道主義)’인 것이다.

‘팔굉일우’란 일본제국주의의 절대주의 천황제를 세계에 확산시킨다는 침략주의를 의미하고 있었으며, ‘황도주의’는 소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만이 일본을 통치한다는 ‘국체의식(國體意識)’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강요하는 도덕주의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편향은 절대주의 천황제하에서 모든 준거적(準據的) 가치의 원천을 ‘살아 있는 신(現人神)’이라는 천황에게 귀일(歸一)시켜, 일본제국주의가 행하는 모든 전쟁을 ‘황도주의’의 실천으로 합리화시켰고, 이윽고는 이 전쟁을 소위 ‘성전(聖戰)’으로 정당화시켰다. 이것은 이미 침략주의로서의 ‘팔굉일우’와 그 도덕으로서의 ‘황도주의’ 속에 내재될 수밖에 없는 절대주의 천황제의 숙명적이었던 것이다.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대는 류큐왕국과 홋카이도에 대한 침략과 ‘황민화’로부터 시작되어, 소위 ‘주권선’과 ‘이익선’의 설정 이후 대만과 한국으로, 만주로, 중국 대륙으로, 동남아시아로, 태평양으로 끝없이 확대일로의 길을 걸었다.

또한 절대주의 천황제의 침략이 한국 및 만주로 확대될 때에는 ‘동양의 평화’를 선전하였고, 중국과의 전면전인 중일전쟁 이후 동남아시아는 물론, 태평양으로 소위 ‘성전’이 확대됨에 이르러서는, ‘아시아의 해방’이 외쳐지며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이 선전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제국주의는 절대주의 천황제의 소위 ‘국체의식’을 도덕적 기본으로 삼아 소위 ‘만세일계’라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국가관을 성립시켜, 일본 민족의 우월성과 세계 지배의 정당성을 날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주의 천황제에 바탕을 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전 세계(八紘)’를 ‘한집(一字)’으로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패망의 그 날까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던 것이다.

【参考文献】

- 河村富士男 編 ‘外交編’『明治文化資料叢書』第四卷, 風聞書房, 1972. p.8, p.94, p.105, p.121
『枢密院会議議事録』東京大学出版会. 1984. pp.156~157
大山梓 編 『山県有朋“-意見書』原書房, 1966, p.196
丸山真男 ‘明治国家の思想’『戦中と戦後の間』みすず書房 1976. p.210
信濃教育会 編 『伊沢修二選集』信濃教育会, 1958. pp.587~588
煙山専太郎 ‘日清日露の役’『岩波講座・日本歴史』岩波書店 1934. pp.60~61
大浜徹也 ‘戦時外交とポーツマス条約’『近代日本史の基礎知識』有斐閣 1982. p.193
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岩波文庫 1984. p.237
白井勝美 『日中戦争』中公文庫 1981. pp.8~9
『国体の本義』文部省 1937. p.9
大日本帝国学士院編纂 『皇室制度史』第一卷 大日本帝国学士院 1937. p.126
陸軍省 新聞班 『時局の重大性』1937. 11. 18. p.66
『石原莞爾資料 — 戦争史論』原書房 1968. p.431
日本外務省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巻, 原書房 1973. p.401, p.436, p.450, pp.573~574, pp.636~637
竹内好 ‘近代の超克’『近代の超克』富山房百科文庫 1983. p.313
家永三郎 『日本史資料』下巻 東京法令出版 1974. p.892

『官報』1894. 8. 2.
『官報』1904. 10. 10.
『国民之友』第234号 1894. 9. p.18, p.19, p.23
『国家教育』33号. 1895. p.10
『文芸春秋』1942. 1月号. p.89, p.93, p.94, pp.96~97
『朝光』1942. 9月号. pp.27~29
『朝日新聞』1940. 8. 2.

要 旨

日本帝國主義の戦争は絶対主義天皇制の拡大の過程であった。絶対主義天皇制は、その侵略の野望を西洋帝國主義との対決意識で合理化したのであるが、その根底には西洋に対する劣等感をアジアにまわす抑圧移譲がおかれていた。

その報償作用として日本帝國主義は、所謂文明国であると自称しながら、アジアに対する施恵意識と指導者意識を露骨に打ち出した。その決定体が八紘一字と皇道主義である。

八紘一字とは、日本帝國主義の絶対主義天皇制を世界に拡散させる事を意味していたし、皇道主義は、所謂万世一系の天皇だけが日本を統治するという国体意識を世界の全ての民族に強要する道德主義の別の呼び名であった。

このような精神的偏向は、絶対主義天皇制の下で全ての準拠的な価値の源泉を現人神と偽った天皇に帰一させ、日本帝國主義が行うあらゆる戦争を皇道主義の実践であると合理化し、やがてはこの戦争を所謂聖戦であると正当化した。これは、すでに侵略主義としての八紘一字と、その道德としての皇道主義の中に内在するしかない絶対主義天皇制の宿命でもあった。

絶対主義天皇制の拡大は琉球王国と北海道に対する侵略と皇民化から始まり、所謂主権線と利益線の設定以後台湾と韓国へ、満州から中国大陸へ、東南アジアから太平洋へと限りなく拡大一路の道を辿ったのである。

そして、絶対主義天皇制の侵略が韓国および満州へ広まる時には東洋の平和を宣伝したし、中国との全面戦である中日戦争以後東南アジアは勿論、太平洋へと所謂聖戦が拡大するにつれ、アジアの解放が叫ばれながら、大東亜共栄圏の建設が宣伝されたのである。

この過程で日本帝國主義は、絶対主義天皇制の所謂国体意識を道德的な基本にして万世一系という天皇を頂点とする家族国家観を成立させ、日本民族の優越性と世界支配の正当性を捏造したのである。

そして、絶対主義天皇制に基盤を置く日本帝國主義の侵略戦争は、全世界（八紘）を一つの家（一字）にするという妄想にしがみついて敗北のその日まで止まるすべもなく延々と続い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絶対主義天皇制、八紘一字、皇道主義、国体、聖戦、大東亜共栄圏。

투 고 : 2008. 2. 29
1차 심사 : 2008. 3. 15
2차 심사 : 2008. 3. 29

住 所 : (133 - 777) 서울시 성동구 행당2동 한진타운 116-1002

電 話 : (02)2299-9872 / 010-8636-9872

e-mail : chung51@dongduk.ac.kr